

제33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2. 10. 5.(수)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

#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농축산유통국 소관)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대상기관		사업건수	출연예정규모	비고
계		2건	3,490,000	
(재)경상북도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본 원	1건	2,030,000	
	경북농민사관학교	1건	1,460,00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출연 여부만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도비 본예산 기준)

출연기관	출연금액(백만원)				비 고
	2020	2021	2022	2023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3,330	3,200	2,880	3,490	농식품유통과
본        원	2,000	1,850	1,480	2,030	
경북농민사관학교	1,330	1,350	1,400	1,460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과 직속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전년도에 비해 출연금이 6억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출연기관 동의안 내용 중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함께 주요사업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출연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 또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추진사업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을 보다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 【2023년도 출연금 증감현황】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액		
	계	본원	경북농민 사관학교	계	본원	경북농민 사관학교	계	본원	경북농민 사관학교
합 계	2,880,000	1,480,000	1,400,000	3,490,000	2,030,000	1,460,000	610,000	550,000	60,000
인건비	2,202,125	1,350,596	851,529	2,253,983	1,388,412	865,571	51,858	37,816	14,042
경상경비	677,875	129,404	548,471	1,236,017	641,588	594,429	558,142	512,184	45,958
일반운영비	226,919	0	226,919	464,420	240,540	223,880	237,501	240,540	△3,039
여비	48,000	0	48,000	131,200	88,000	43,200	83,200	88,000	△4,800
업무추진비	49,850	27,800	22,050	49,850	27,800	22,050	0	0	0
직무수행경비	67,007	30,527	36,480	90,960	54,480	36,480	23,953	23,953	0
연구개발비	45,000	0	45,000	85,000	50,000	35,000	40,000	50,000	△10,000
복리후생비	0	0	0	116,438	62,966	53,472	116,438	62,966	53,472
교육훈련비	0	0	0	4,800	0	4,800	4,800	0	4,800
수선유지교체비	0	0	0	0	0	0	0	0	0
행사홍보비	0	0	0	0	0	0	0	0	0
관서업무비	6,880	6,880	0	11,760	6,880	4,880	4,880	0	4,880
평가급	144,219	64,197	80,022	191,589	110,922	80,667	47,370	46,725	645
민간사업지원금	90,000	0	90,000	90,000	0	90,000	0	0	0
시설비및부대비	0	0	0	0	0	0	0	0	0
자산취득비	0	0	0	0	0	0	0	0	0

<참고 2>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